

③ 전문위탁 대상 및 절차

구분	적용대상자	관련법률(규정)
전문위탁 대상	<p>국가 유공자 등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국가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진료대상자 중 [진료감면대상자 제외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염병 환자 또는 전염병 의사환자로서 보훈병원 내에서 진료가 곤란한 경우 - 희귀난치성지환 또는 중증질환 등으로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한 경우 - 보훈병원에서 진료과목이 없거나 의료장비의 마비 등으로 진료가 곤란한 경우 <p>※ 단, 국가유공자 7급 대상자 중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자는 상이처외 진료시 20% 본인부담</p>	
전문위탁 절차	<p>해당 진료과 의사가 진료 후 보훈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병원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전문병원으로 위탁진료가 가능</p>	